

「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5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· 장미경 · 정지원 의원(3인)

다. 찬 성 자: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영태 · 김원섭 · 김춘남 ·  
이상호 · 이지연 · 장세구 · 허민근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3월 6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3월 14일

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18세 미만의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환자, 자살위험자 등 실종 취약군의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실종자 발생 및 조기 발견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실종자 발생 예방·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6조
  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조의2, 제4조
  - 「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
  - 「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실종 취약군의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05년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 사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실종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·예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